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155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1991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1550 판결

전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수경, 김재인, 전병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원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1. 2. 3.

판결 선고 2021. 3. 3.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2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2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차전6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12. 'C는 원고에게 2,718,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채무의 원리금은 2020. 3. 14. 기준 10,782,058원[= 원금 2,718,304원 + 지연손해금 8,063,754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은 2020. 3. 14.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E, F, G이 있다(상속지분 피고 3/11, 자녀들 : 각 2/11지분).

라. 위 상속인들은 2020. 3. 14.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9. 1. 접수 제211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조합은 2020.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앞서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의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 요건, 방식 및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에 의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2020년도 공시지가는 100,962,763원[=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488,695,200(= 3,192,000원/㎡ × 153.1㎡) +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 66,600,000원} × 2/11, 원 미만 버림]인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49,000,000원, 87,1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76,217,309원[= 100,962,763원 - 24,745,454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136,100,000원 × 2/11, 원 미만 버림)]이다. 그리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이자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2020. 10. 21.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1,028,940원[= 원금 2,718,304원 + 지연손해금 8,310,636원]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11,028,940원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76,217,309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1,02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1,028,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은석

별지